



당신을

지켜보고 있습니다!

장애인전용주차구역!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!

| 신규주차표지 |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
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, 주차가능표지가
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

과태료 10만원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

과태료 50만원

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, 대여,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

과태료 200만원

- ▶ 사망자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
- ▶ 가족 혹은 지인의 표지를 대여해 사용하는 행위
- ▶ 표지를 위·변조해 사용하는 행위
- ▶ 회수/폐기 처분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
- ▶ 장애인의 주소 변경으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
- ▶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

법적근거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,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과태료)

장애인전용주차구역! 도덕적 양보가 아닌 법률적 권리입니다.

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

